瑞山市議會議員懲戒要求의 件

審 査 報 告 書

2001. 10. 9
징계자격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가. 發議日字 : 2001. 10. 5

나. 發 議 者 : 이완복 의원외 8인

다. 回附日字 : 2001. 10. 5

라. 上程日字 : 2001. 10. 9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이완복 의원)

가. 징계 대상 의원

1) 주 소 : 성연면 고남리412
2) 성 명 : 이 창 배
3)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나. 징계사유

1) 징계대상 의원인 이창배 의원은 2001. 8. 13일 윤훈병으로부터 임순덕과 내연의 관계에 있으며 고가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고 5천만원을 사기했다고 서산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윤훈병과 25년간 내연의 관계를 지속하여 오기는 했으나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닌 점으로 이는 여자관계의 단순한 질투 건이며,

또한 속옷을 판매한 것은 통상의 거래관계 및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며,
아울러 5천만원 사기건에 대해서는 윤훈병의 딸 유명숙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고소인은 고소권이 없는 관계로 경찰서 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게시판 및 일부 지방언론 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자함.

3. 適 用 法 規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
나.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 략(비공개 회의)

5. 討論 및 少數意見 : 생략(비공개 회의)

6. 審査結果 : 출석정지 15일

의안번호	제 229 호
의 결 년 월 일	2001. . . (제 회)

서산시의회의원(이창배)징계요구의 건

발 의 자	이완복 의원외 8인
발의년월일	2001. 10. 5.

징 계 요 구 서

의안 번호	229

발 의 자 : 이완복 의원외 8인
발의년월일: 2001. 10. 5.

1. 징계대상의원

가. 성 명 : 이 창 배(李昌培)
나. 주 소 :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412
다.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2. 징계사유

- 위 의원은 2001. 8. 13 윤훈병(여,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45-19)으로부터 임순덕(여, 40세, 서산시 동문동 878-15)과 내연의 관계 및 5,000만원을 사기했다는 고소장이 서산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한 결과 윤훈병과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5,000만원 사기 건에 대하여도 경찰서 조사결과 윤훈병의 딸 유명숙이 실질적 피해자로서 고소인은 고소권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함
- 또한 임순덕으로부터 고가에 속옷을 구입한 것은 통상의 거래관계 및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경찰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로 처리(2001. 9. 6)되었으나
-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인터넷 게시판에 내용 게재 및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함은 물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내연의 관계를 장기간 지속해 옴으로써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하여 징계하고자 함

3. 관련법규 및 자료

1)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및 제78조, 제80조

나.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2) 관련자료

가. 서산시의원 범죄통보(수사61110-5293호)